울산다운2 A-6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추가모집(선계약후검증)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11. 12. (목)

1. 건설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다전로 277, 울산다운2 A-6블록 행복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1.1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단, **금융자산 및 부채의 판단기준일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즉,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는 해당 산정시점에 조회된 것으로 적용합니다.)**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 공고는 입주자격 요건(소득, 자산, 기간 등)을 완화**하여 모집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 공고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먼저 동호 추첨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주는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주택소유 여부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 직권 해지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계약 이후 자격검증 및 소명에는 약 8주 정도 소요되며, 추후 적격자에 한해 입주 안내는 개별통보 됩니다.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적격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완화 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적용)

구분	완 화 내 용
주택 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 요건	**소득요건 배제**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조회 시행
자산 요건	**자산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4,542만원 이하 일 것)** ***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간 요건	**청년계층** 소득업무 종사기간 총 **7년 이내** [일반조건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일반조건 7년 이내] 또는 자녀연령 **만 9세 이하**[일반조건 만6세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연령 **만 9세 이하**[일반조건 만 6세이하]

-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의 모집호수는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눠 선정**되며, **계약시점의**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고,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주택형의 경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완화기준 적용),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2회차)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회 갱신 시에는 소득, 자산 초과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2회에는 예비자가 없을 경우에만 할증없이 재계약 허용됩니다.
- **금회 공급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 학 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11.13.~2007.11.1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65세 이상의 사람**(1961.11.12.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만65세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대행 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장대행접수 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및 기타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류 참조)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자세한 사항은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참조)**

신청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소명처리	적격자 발표 및 입주 (개별안내)
'26.11.23(월) ~11.25(수)	'26..12.02(수)	'26.12.03(목) ~12.08(화)	'26.12.16(수)	'26.12.28(월) ~12.30(수)	약2개월 소요	'27.03(예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주택 위치, 면적,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확인 및 숙지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문자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입주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2-1. 공급대상

단지명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금회 모집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당첨자 (207)	예비자 (195)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울산다운2 A-6블록	16	대학생, 청년	270	122	100	16.99 16.99	10.5812 10.4212	1.4536 1.4536	8.2353 8.2353	37.2601 37.1001	10	벽식구조 /복도식 /개별 난방	'25.10
	26	청년	42	6	15	26.52 26.52	15.5908 15.3908	2.2689 2.2689	12.8546 12.8546	57.2343 57.0343	10		
		주거급여수급자	80	19	20						20		
		고령자	38	6	15						20		
	36A	청년	88	13	20	36.74	20.7295	3.1433	17.8083	78.4211	1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40	41	25						무자녀:10 유자녀:14		

- 금회 입주자모집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누어 선정**되며, **계약시점의**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입주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하여 계약하며 계약안내 및 계약체결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갱신계약전까지 유지되며 갱신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약신청 시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였으나, 서류검토 및 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울산다운2 A-6) 16형 주택에는 책상, 가스쿡탑, 소형냉장고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하며, 단지 내 공용세탁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팸플릿 참고)**

2-2. 임대조건

단지명	공급 형별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울산다운2 A-6블록	16	대학생 청년(소득無)	20,400,000	1,020,000	19,380,000	93,500	(+) 6,000,000	26,400,000	63,500
							(-) 16,000,000	4,400,000	140,160
		청년(소득有)	21,600,000	1,080,000	20,520,000	99,000	(+) 7,000,000	28,600,000	64,000
							(-) 17,000,000	4,600,000	148,580
	26	청년(소득無)	32,640,000	1,632,000	31,008,000	149,600	(+) 17,000,000	49,640,000	64,600
							(-) 27,000,000	5,640,000	228,350
		청년(소득有)	34,560,000	1,728,000	32,832,000	158,400	(+) 19,000,000	53,560,000	63,400
							(-) 28,000,000	6,560,000	240,060
		주거급여수급자	28,800,000	1,440,000	27,360,000	132,000	(+) 14,000,000	42,800,000	62,000
							(-) 23,000,000	5,800,000	199,080
		고령자	36,480,000	1,824,000	34,656,000	167,200	(+) 20,000,000	56,480,000	67,200
							(-) 30,000,000	6,480,000	254,700
	36A	청년(소득無)	45,220,000	2,261,000	42,959,000	207,250	(+) 24,000,000	69,220,000	87,250
							(-) 37,000,000	8,220,000	315,160
		청년(소득有)	47,880,000	2,394,000	45,486,000	219,450	(+) 26,000,000	73,880,000	89,450
							(-) 39,000,000	8,880,000	333,2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3,200,000	2,660,000	50,540,000	243,830	(+) 29,000,000	82,200,000	98,830
							(-) 44,000,000	9,200,000	372,16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 검증후 입주가능시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분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④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단, 신청자 본인이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대학생 계층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상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미소유를 입주자격**으로 하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부산광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남도**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란 실제 본인이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캠퍼스 소재지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 울산다운2 A-6블록 16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11.13.~2007.11.12.)**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완화조건】 **총 7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공고일기준 예술활동증명서 상 유효기간 내 이어야 함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④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단, 해당 세대의 총 자산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원인 경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청약신청 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하였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조회결과 소득이 조회될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해당되는 청년계층 임대조건(소득 有 또는 소득 無)을 적용함**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현재 직장에서만 근무한 기간이 아닌, 이전부터 소득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프리랜서, 자영업 등 위 서류를 통해 소득업무 종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사기간 증빙에 대한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이 불가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순위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부산광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남도**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 울산다운2 A-6블록 16형의 경우 "대학생", "청년"의 공급물량은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②~④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③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단, 해당 세대의 총 자산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본인과 (예비)배우자가 모집대상 주택을 각각 신청시 1세대 1주택 신청원칙에 따라 모두 무효 및 부적격 처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울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부산광역시, 경주시, 청도군, 밀양시, 양산시**)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상남도**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거주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공고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추첨

3-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① **[완화조건] 소득요건 배제**
② **[완화조건] 자산요건 배제(단, 해당 세대의 총 자산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3-5. 주거급여수급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당첨자 계약체결	자격검증 후 입주
'26.11.23(월) 10:00 ~'26.11.25(수) 17: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대행접수]** **'26.11.23(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 LH 울산권주거복지지사 1층 대회의실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20, 대상웰라움 1층)** **신분증, 구비서류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26.12.02(수) 14:00 이후** (확인)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26.12.03(목) 09:00 ~'26.12.08(화) 18:00** 온라인 서류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 발송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24, 4층 임대공급운영팀 울산다운2 A6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접수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함	**'26.12.16(수) 14:00 이후** (확인) *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 청약플러스에 별도게시	**'26.12.28.(월) 10:00 ~'26.12.30.(수) 17:00** 부동산전자거래시스템전자계약 *현장계약 별도 안내 (예정)	**'27.3월 예정** 자격검증 약 2개월 소요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에 필요서류를 온라인서류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청약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탈락처리 됩니다.**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청약』→ 『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 대상자 명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청약』 → 『청약결과 확인』→『당첨/낙찰 결과조회』및 ARS(1661-7700)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미대상자 및 낙첨자의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별도안내 드리지 않사오니, 당첨여부 확인은 상기와 같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apply.lh.or.kr)에서 조회 부탁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및 현장 청약대행접수 청약자에 한하며,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 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발송 시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인한 미송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우체국 소인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및 자산(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주택소유 여부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이 직권 해지되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계약 이후 자격검증 및 소명에는 약 8주 정도 소요되며, 추후 적격자에 한해 입주 안내는 개별통보 됩니다.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적격자 발표 및 입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구(블록) 선택	주택형 선택	공급구분 선택	청약신청서 작성	청약신청 완료

ㅇ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ㅇ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신청은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시작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신청은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시작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신청 청약 방법

ㅇ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5.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신청장소	LH 울산권주거복지지사 1층 대회의실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20, 대상웰라움 1층
약도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ㅇ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6.12.02(수)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기한 내 ['26.12.03(목)~12.08(화)]에 해당 서류를 온라인 서류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인 2026.12.08.(화)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등기우편발송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4층 임대공급운영팀 울산다운2 A6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48733, 봉투 겉면에 "신청단지, 주택형, 이름, 접수번호" 반드시 기재)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11.1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MyMy서비스 이용 가이드 영상 참고하기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LH 공식 Youtube 채널에 있는 MyMy서비스 가이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MyMy서비스 이용 안내>

▶ 공공 마이데이터와 MyMy서비스란?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❶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❷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서류(e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MyMy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신청자 및 세대원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이용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서류 : 제출 대상 서류 中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 신청방법

① 현장접수 시 :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 MyMy서비스 전자서명은 이용 불가능 합니다. (수기서명 및 제출 필요)

② 온라인접수 시

· (신청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제공 요구(=MyMy서비스 동의) 요청

※ 신청자는 청약플러스 內 SMS 발송 기능으로 세대원에게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제공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세대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세대원본인인증 → "본인정보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체크

- 주의사항

①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일부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발급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로 신청은 가능함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MyMy 서비스 이용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O (전자서명)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O (전자서명)	1통
입주자격완화 확약서		X	
선계약 후검증 확약서		X	
[선택]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 (제출대상)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을 희망하는 자 • (제출방법) 온라인(청약플러스) /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 ※ (주의) 세대원은 전원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에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O (전자서명)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상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O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상세)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O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O	1통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 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O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X	1통
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X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MyMy 서비스 이용	발급처
대학생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X	해당 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X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X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X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O	
청년계층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군인연금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가입자만 MyMy서비스로 제출 가능)	O	국민연금 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O	국민건강 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군인연금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가입자만 MyMy서비스로 제출 가능)	O	국민연금 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O	국민건강

		으로 발급)		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X	지방고용 노동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O	국민연금 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O	국민건강 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X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O	국민연금 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O	국민건강 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O	국민연금 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O	국민건강 보험공단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X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X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O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X	해당직장 등
		·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X	해당학교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경우 : 복무확인서(복무 중인 경우) 또는	X	병무청
		- 병적증명서(복무완료인 경우)	O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X	

신혼부부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X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O (전자서명)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O	-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X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X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등본	O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O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군인연금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가입자만 MyMy서비스로 제출 가능)	O	국민연금공단 등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X X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O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X	국세청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X	
주거약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O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O	국가보훈부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O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O	국가보훈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O	국가보훈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O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O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O	행정복지센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자) 발표 : 2026.12.16.(수) 14:00 이후

- 당첨 여부는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명단」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년계층의 경우 계약시 임대조건은 청약신청 및 서류제출검토 내용으로 계약진행되나 추후 자격검증 결과 소득 결과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모집은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나눠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안내 되며,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주택형의 경우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1600-1004)에 통보하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개인정보변경」)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되며, 입주여부는 키 수령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자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주민등록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서면등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미통보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성함, 신청 단지명, 연락처를 기재 후 송부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안내 : 추후 개별 통보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전자계약] : '26.12.28(월) 10:00 ~ '26.12.30(수) 17:00

- 계약금 납부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우리공사 입금확인 (SMS 발송)	→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Google Play)
				로그인 (공동인증서/휴대폰인증) → 계약체결(공동인증서) → 계약서 출력, 보관(공동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내에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 가능합니다.

[현장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완화	■ **입주 자격 완화 내용** **항목** / **내용** 소득요건 : **소득요건 배제** 자산요건 : **자산요건 배제** ※ **단,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 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니며,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일 것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생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기간요건 완화 : 청년(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시 총 소득종사기간 기본 : 총 5년 이내 → **완화 : 총 7년 이내**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 시 혼인기간 기본 : 7년 이내 → **완화 : 10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신청 시 자녀의 연령 기본 : 만 6세 이하 → **완화 : 만 9세 이하**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금회 공고로 입주자격완화(소득 및 총자산 배제) 요건으로 계약한 사람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단, 완화된 소득요건으로 입주한 자는 완화조건에 따라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셔야 하며,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하신 분들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

	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 110% / 120% 10%초과 30%이하 / 120% / 130% 30%초과 / 130% /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는 경우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1회에 한하여 임시로 열쇠 불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거행복지원센터(구 관리사무소)가 운영하지 않는 주말에는 열쇠 불출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등록 관련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 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울산다운2 A-6블록 행복주택의 본 단지의 주차가능대수는 565대이며, 지하주차장 차로높이는 해당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위치 등은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지구 및	■ **지구 여건**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48호, 2023.09.27)로 승인된 "울산다운2 공공

단지 특성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해당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대상지 500m 이내 다운중, 다전초, 다운고 위치하고 있으며, 2km 이내 다운초, 제일중, 중앙고, 문수고 위치, 5km 이내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울산교육청 10km 이내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위치 - 사업대상지 5km 이내 울산-부산고속도로, 울산-포항고속도로 국도14호선 다운~구영간 도로, 국도24호선 위치 - 5km 이내 울산시청, 울주군청 3km 이내 백화점, 대형마트, 울산혁신지구 위치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의 개발 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본 단지(A-6BL)은 행복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지구외 연결도로(3개소)의 경우 사업추진 중 관계기관 협의, 민원 등의 사유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주시기와 개통시기가 상이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외 도로의 경우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대규모 산업단지와 이격되어 있음 - 근린공원1,2호 내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원형보전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공원 내 방재시설인 저류지가 중복 결정되어 설치 예정임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보도) 간 레벨차이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자세한 노선은 관할 지자체(울산시 교통과)에서 결정합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울산다운2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601동 인근 울산다운2 A-5BL 아파트가 위치해 있음
- 단지 인근(604동) 소공원 계획
- 도로를 경계로 C-1BL 민간분양 아파트가 위치 할 예정(날짜 미정)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지하2층 ~ 지상 16~22층 규모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주차대수는 565대로 세대당 0.7대로 설계되어 있음.(단,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 쓰레기 분리수거함내 '배출한 만큼만 수수료를 지불하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본 단지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북측에는 LH국민임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에는 경관녹지(소공원)가 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 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로 인근 지구외 산지 유입수 처리를 위한 집수정 등이 단지 내에 설치되며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필로티, 지상1층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 포함)과 외부에 설치되는 휴게공간 등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배치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601동 데크 2층에는 사회적 기업, 할머니·할아버지 방이 위치할 예정
- 602동 데크 1층에는 지역편의시설 및 작은 도서관이 위치할 예정
- 종합보육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시 일부 인접세대는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 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진.출입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분진,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일부동 전체와 일부세대는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부 입주자는 이사 전 반드시 이사 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승강기 홀과 현관문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유형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상황 등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전용구역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전후면 공기안전매트 전개구간에는 교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층 승강기 홀에 환기설비 및 제습기가 설치되며, 장비 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
- 인동거리는 법적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일부 동의 경우, 층,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울산광역시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동별로 분산 설치되며, 일부 동 전,후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데크2층 지하주차장내 급속충전기(1CH) 1대, 완속충전기(1CH) 2대 , 과금형충전기 8대가 설치될 예정임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및 PAD S/W가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 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단,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04동에 인접하여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각 동 옥상층(또는 지붕층)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동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상층 및 옥탑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601동 아파트 외벽에는 측뢰용 피뢰침이 설치됨
- 일부 세대에서 인근동 옥상층 및 옥탑층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설비, 이동통신중계기, 공청안테나 등이 보일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보안등 불빛으로 저층세대의 경우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

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601동, 602동, 603동 옥상층에는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통신품질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602동 옥탑층에는 위성안테나 2개와 TV공청안테나 안테나 1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동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내부에는 미세먼지안내표시기가 설치될 예정임
- 공동현관 출입을 위해 휴대폰에 원패스시스템(LITE) 등록 시 공동현관 출입문 자동개방 및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서비스가 제공됨
- 비디오폰 단말기(7inch 칼라)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연동) 및 단지공용 기본서비스(공동현관기 연동, 원격검침시스템 연동, 차량출입통제시스템 연동, 엘리베이터 호출 등)이 제공됨
- 주거약자 세대(36㎡B 타입)의 비상통화장치는 비디오폰을 활용하며, 비상연락장치(화장실 및 거실/침실, 침실2), 자석감지기(현관 출입문), 동작감지기(주방/식당)가 각 1개씩 설치되어 일정기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경비실 등에 비디오폰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통보됨
- 주차장 진·출입시 경광등 경보음 발생과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트레이, 가타 등의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시설 등이 시공됨
- 무인택배보관함은 601동 데크2층, 602동 데크1층, 603동 1층, 604동 1층에 위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현장여건상 변경될 수 있음
- 관계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등)에 따라 승강기 내부,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출입구, 각 동 출입구, 각 동 옥상 출입구, 무인택배보관함, 지하주차장, 생활자원보관소, 관리사무소 등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됨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각 층 엘리베이터승강장 및 피난계단 방화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며, 일부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차압감지관 마감 캡이 설치됨
- 급수계량기는 세대 외부 PD 내 설치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 단지의 일부 마감재는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임. 단, 공사 진행 중 업체 선정으로 인하여 색상, 모양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품목 : 일반가구(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싱크대), 창호류(합성수지창, 목제문), 조명기구, CCTV 등
-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 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내역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마감재 내역의 "급"은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자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세대내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등)설치 부위의 벽체 및 바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PD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람.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람
- 세대내 목재문, 가구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유형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함.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제품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및 입주 전 설치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 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의 세탁기 설치공간에 2단 선반이 설치됨에 따라, 건조기 설치 시 이를 고려하여야함.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이로 인한 곰팡이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홈통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 발코니 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화재시 사용가능하도록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빨래건조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자가 개별 설치 시 천장에 각종 매립배관이 위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관리소 등을 통한 미확인이나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은 UBR(조립식) 적용으로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람.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우리공사의 책임이 없음.
- 세대 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현관입구 벽면 인근에 설치됨
- 단위세대 내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정하였으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함
- 16타입 발코니에는 세탁기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아 별도의 세탁기용 전원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단지 내 공용세탁실 사용)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는 불가함 - 공동주택 성능 등급은 예비인증 내용과 본인증시 달라질 수 있음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
	비내력벽 재사용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자연지반 녹지율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비오톱 조성	-
	생태면적율	★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
	자연통풍 확보 여부	-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우수 이용	-
	중수도 설치	-
에너지절약	에너지 성능	★★★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 물질의 사용금지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과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공용부분	-
	전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제공의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친환경 인증제품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 ★로 해당 등급 표시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1.건축부문 설계기준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 단열조치 준수	적용	-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 방습층 설치	적용	**3. 전기부문 설계기준**	
2. 기계부문 설계기준		-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 조명설치	적용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 고효율 전동기	적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지구(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울산다운2 A-6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효성중공업(주) 외 2 ㈜동보 외 1 선테크(주) 외 2 ㈜파이어테크	-	건원엔지니어링 외 4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울산다운2 행복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안내

구분	설치항목
울산다운2 A-6블록	현관 및 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좌식 의자, 욕실문 규격확대 및 미서기문, 비상연락장치(거실, 침실, 욕실), 동작감지센서등 등(팸플릿 참고)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단, 기 입주단지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가능 항목이 상이하고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욕실 출입문 규격확대"는 신청단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시설 유의사항

- **기 입주단지 이므로 세대여건에 따라 설치 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조립식 욕실(BUR) 설치된 단지는 욕실내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 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주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본 행복주택은 계약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